

<의안번호 제2006- 74호>

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6. 12. 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6. 12. 7.

2. 개정이유

- 고등학교 이하로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현 조례의 지원범위를 대학까지, 또한 우수 교원과 학생에게도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범위를 확대하고
- 사업확대에 따른 교육경비의 기준액을 삭제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에 따른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거창군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지원범위 확대(안 제1조).
 - 현행 초·중·고등학교 ⇒ 초·중·고등학교·대학까지 포함
- 교육보조사업 범위 확대(안 제2조제7항 신설).
 - “우수교원 및 우수 학생유치에 필요한 사업” 신설
-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%범위를 삭제(안 제3조).

○ 보조사업의 신청(안 제4조).

- 현행 초·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,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보조금을 신청 ⇒ 대학장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7조
- 한국폴리텍Ⅶ 거창대학의 운영에 관한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약체결
- 예산조치 : '07년 예산반영
- 입법예고(2006. 11. 13 ~ 12. 3)결과 : 1건(지원확대 유보, 기준액 삭제 → 5~10%변경)

5.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“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초·중·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,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거창전문대학과 한국폴리텍 Ⅶ 거창대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교사와 외지 학생유치에 필요한
-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최적의 교육환경과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. 10월 본조례 제정 이후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학교급식, 원어민 교사 채용, 학교급식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3% 교육경비 기준액을 삭제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준높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코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-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1) 제1조(목적)에서 현행 초·중·고등학교 ⇒ 초·중·고등학교·대학까지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내용에 대하여

- 우선 동 조례의 설치근거와 관계된 법령과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으므로

현행조례	개정조례
1)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2)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	1)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2)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3) 고등교육법 제7조가 관계되고 있음.
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서
 · ‘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’고 규정되어 있고

-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(보조사업의 제한)에서
 · ‘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’고 규정되어 있음.

- 고등교육법 제7조에서는
 · 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·보조할 수 있다.’고 규정되어 있음.

※ **쟁점사항(관계법령 저촉여부)**

- (1) 2개의 법률이 조례의 상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판단과
- (2) 지방자치단체에서 **대학교육기관**에 대한 지원근거가
 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지원 대상이 고등학교 이하임을 명시하여 대학의 지원에 대하여는 논란여지가 없으나,

- 고등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 표기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, 대학교육기관에 지원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다소 있을 수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음.

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해 '97.12. 13일 초·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,

교육기본법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교육기본법 제7조(교육재정) ②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※ 따로 정한 법률 ⇒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

-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명확한 해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아
 - 관계법에서 제·개정 당시의 개정이유와 규정해 놓은 적용대상에 대한 경위를 살펴봄으로써 최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비 보조에 대하여

《최초 신설 : '95. 12. 29, 개정 : 2000. 1. 28》

- 제안이유 : 시군 및 자치구는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- 주요골자 : 시군 및 자치구는 (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)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
- 수석전문위원(尹壽男) 검토보고 : 지금까지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경비보조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이 용이하게 되겠음.
- 교육부 장관(朴燦植) 질의답변 내용 : 현행법으로서는 시·도만이 교육에다 재정지원을 할 수 있지 군이나 구에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- 고등교육법 제7조에서 언급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제3조에서 어떠한 자치단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음.

- 고등교육법 제3조(국·공·사립학교의 구분) 제2조 각호의 학교는 국가가 설립·경영하는 국립학교,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공립학교(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·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.),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.

※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광역이나 기초이냐를 구분할 필요없이 공립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석이 가능하며 또한 천정배 위원과 교육부 장관(이명현)과의 질의답변에서 좀더 명확히 알 수 있음.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천정배위원 : 고등교육법은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시·군이나 자치구나 이런 쪽에서 공립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전혀 예정을 않고 있나요?- 교육부 장관 :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- 천정배위원 :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면 이를테면 어떤 시,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되지만 안양시라든가 시단위에서는 공립학교를 못 만드나요?- 교육부 장관 : 예,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. |
|--|

2) 제3조(보조기준액)에서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%범위를 삭제함에 대하여는

-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(보조사업의 제한)에 의하면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살펴볼 때, 현재의 거창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됨

○ 입법예고에서는 거창교육청으로부터 지원확대에 대하여 유보의견과 지원기준액에 대하여 3%⇒5~10%로 변경의견이 있었음.